"주 최대 52시간 시행, 우리는 과로사회에서 탈출합니다"

고용노동부

고 용 노 동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 기간 연장(2.6.까지) 안내 요청

1. 관련: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기간 연장('22.1.14,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방안을 3주간**('22.1.17.~2.6.)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이에, **각 지방관서 및 유관기관**은 관할 고용허가 사업주 및 내·외국인 근로자들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잘 준수**할 수 있도록 기관 홈페이지 및 SNS(외국인 커뮤니티) 등을 활용하여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 기간 연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보도참고자료('22.1.14) 참고

붙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연장(보건복지부 '22.1.14, 보도참고자료 일부 발췌) 1부. 끝.

고용노동부장관

수신자 지방관서(지역협력부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일자리과장),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외국인력국장), 한국고용정보원장, 외국인력상담센터 및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운영기관 대표,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 대표

주무관	**이동하**	행정사무관	**이용우**	외국인력담당관	전결 2022.1.18. **정해영**
협조자					

시행 외국인력담당관-257 (2022. 1. 18.) 접수

우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어진동 581 고용노동부) 7층 외국인력담당관실 / www.moel.go.kr

전화번호 044-202-7150 팩스번호 044-202-8027 / merseum@korea.kr / 대국민 공개

"모든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